

부동산경매취하서

사 건 20ㅇㅇ타경ㅇㅇㅇㅇ호 부동산강제경매

채 권 자 000

채무자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위 사건 전부를 취하합니다.

2000. 0. 0.

위 채권자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제출법원	집행법원		
제출부수	취하서 1부	관 런 법 규	민사집행법 제93조
비 용	·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: 1필지 당 7,200원 · 증지 : 1필지 당 3,000원 · (법원에 따라 송달료 : 3,700원×2회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)		
기 타	 ○(법원에 따라 송달료: 3,700원×2회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) ○경매신청 후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기까지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, 경매신청인 외의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. ○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(민사집행법 제93조 제2항). 여기서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의 절차에서 집행관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의 절차에서 집행관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이름과가격이 불리워진 사람(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)를 말하는 것이고, 매수인은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 가운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함. ○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때에는 선행사건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취하하여도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계속 진행됨(민사집행법 제 제 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